

대한민국

인신매매퇴치 및 감시국(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2017 년도 인신매매보고서

1 등급

대한민국: 1 등급

대한민국(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정부는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은 1 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이전 보고 기간에 비해 인신매매 수사·기소·유죄 확정 건수를 늘리고, 다수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하며, 7,397 명의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호텔·유흥 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예방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은 형량을 부과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인신매매 범죄를 기소해왔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해주기 위한 공식지침 수립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겪은 일에 대한 일부 경찰관들의 배려 부족으로 피해자는 또 다른 정신적 외상을 입거나 더 큰 위협에 빠질 수도 있었다. 외국인 매춘여성 등 일부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인신매매로 내몰린 나머지 저지른 범죄 때문에 감금 또는 송환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안

형법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사범을 수사·기소하고 유죄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게는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집행 공무원, 검찰, 사법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법의 정의에 따라—약취, 매매행위, 강제력 혹은 감금 여부와 상관없이—‘인신매매’를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표준화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사용하여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개인, 장애인, 각종 비자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사전예방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공식지침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인신매매 방지노력을 총괄 담당할 정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피해자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착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노력에 길잡이가 되도록 인신매매를 구체적 대상으로 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국내외에서 아동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국인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고용계약을 확인하고 스폰서 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 발급한 호텔·유학 비자와 관련된 인신매매의 취약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국적 원양어선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사범에 대한 수사 와 기소를 지속해야 한다.

사범 처리

정부는 법 집행 노력을 강화했다. 형법 제 31 장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사범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량은 강간 등 다른 중범죄의 형량에 준하는 엄격한 수준에 해당한다. 2016년,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된 562건(2015년에는 421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426명(2015년에는 347명)을 기소하고 그 중 213명(2015년에는 64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인신매매 관련법에 근거하여 유죄가 확정된 피의자는 33명에 그쳤다. 정부는 벌금 8백만 원(6,649달러)에서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렸는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인신매매 범죄를 막는 데 역부족이다. 법무부는 검찰 및 법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방지 문제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수의 교육을 연중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약취, 매매행위, 무력 행사 또는 감금 등이 있어야만 인신매매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널리 퍼져있었다. 그리하여 일부 판·검사들은 매우 심각한 사건에만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하고 처벌이 덜 엄격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년), 근로기준법,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대부분의 인신매매 사범을 기소, 처벌했다. 보고 대상 기간 중 경찰관 5명이 아동 등과의 성매매 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는데, 정부는 이 중 1명에게 벌금 2천 달러를 선고했고 또 다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 기간 말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외국인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82명(2015년의 경우 58명)을 식별하여 지원을 제공했다. 정부는 내·외국인 노동 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에 수립된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계속 사용했다. 2016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식별을 위한 보다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기준을 권장하기 위해 개정된 피해자 식별 지침을 배포했다. 경찰청은 인신매매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들을 법 집행기관과의 첫 접촉 시점부터 보호·지원 시스템에 인도하는 단계까지 책임졌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제공에 관한 공식 지침을 발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들은 인신매매 방지노력을 총괄할 정부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자 식별 수행기준을 수립하기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맞추어진 도움을 제공하는 92개 시설을 지원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지원센터 39개를 운영했다. 2016년, 정부는 상담 서비스, 숙소, 교육, 재활지원 등을 통해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7,397명을 지원했다. 경찰청에서는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여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을 조사할 때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를 동석시켰다. 법률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기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국은 수사과정에서 매춘 여성, 특히 외국인 여성을 수감시켰고 인신매매 식별 지표를 적용하여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를 송환시켰다. 경찰 등 공무원들은 종종 내국인 여성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식별하기보다 범죄자로 취급했다. 정부는 인신매매에 취약한 두 집단인 외국인 배우자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고통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적 대안을 제공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최장 1년간 취업이 허가되는 G-1 비자를 발급해주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이 수단을 활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 서비스 알림, 홍보 캠페인, 이벤트 행사 등을 주관하고, 인터넷으로 관련자료를 배포하고, 인신매매 방지 핫라인을 홍보하고, 일선 학교에서 성적 인신매매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E6-2 호텔유흥 비자 입국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착취를 막고자 정부는 비자 신청자들에게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체류기한 위반 비율이 높은 국가의 신청자들은 개별면접을 받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3,200곳 등 총 2만 개 직장을 대상으로 노동착취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1,720개 직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생활여건, 임금체불, 가혹행위 등 근로자 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3,33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들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를 내렸지만,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기소 여부는 확실치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13개국어로 핫라인을 운영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한국인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핫라인 운영을 계속했다. 축사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내국인 지적 장애인 남성이 발견된 후, 정부는 더 이상의 강제노동 사례를 막고자 동일 지역 내에 등록된 지적 장애인 13,776명의 행방을 조사했다. 10명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했고 강제노동 의심사례 17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사건 27건 모두를 경찰에 넘겼다. 인신매매를 구체적 대상으로 한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은 없었지만,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에 인신매매 척결 안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상업적 성매매 수요를 근절할 목적으로 공항, 기차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전개했고, 공무원 및 특정 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이

외국에서 성매매 관광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는 캠페인에 착수했으며, 필리핀 대사관과 공동으로 성적 인신매매에 관한 현지 법률 안내책자를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배포했다.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군도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매수자였다. 정부는 해외 성매매 관광에 참여한 내국인 4명(2015년의 경우 15명)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했으나, 내국인 성매매 관광 사범을 기소하거나 유죄를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외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계속했다.

인신매매 개요

지난 5년간 보고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성적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처한 성인 남녀와 아동의 송출국·경유국·기착국이다. 한국 여성들은 국내외에서 강제 매춘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한국 여성들은 관광, 취업, 유학 비자로 기착국에 입국하여 안마시술소, 살롱,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매춘업체를 통해 강제로 매춘에 종사하게 된다. 유흥업소 업주들이나 악성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은 매춘을 강요당한다. 신체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한국인 남성들 일부는 착취당하기 쉬운 처지에 놓여 염전이나 축사 등에서 강제노동을 당했으며 언어적·신체적 가혹행위,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로·생활 여건 등에 시달린다. 인신매매범들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착취하며 한국 아동들은 인터넷상의 구인을 통한 성적 인신매매와 상업적 성착취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일부 가출 소녀들은 거처와 생활비에 충당할 돈이 필요해서 성적 인신매매로 내몰린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아시아 국가, 중동, 남미 출신의 남성 및 여성이 한국 내에서, 그리고 한국인이 등록, 운항하는 어선 위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이들 지역 출신 여성 중 일부는 강제 성매매를 강요받는다. 외국인근로자,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는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채무노예로 전락할 취약성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가 상당수인 약 40만 명의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이 어업, 농업, 축산업, 요식업,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강제노동의 징후를 보이는 근로조건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피지를 비롯한 그 밖의 다른 태평양 항구로 출항하는 원양어선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이 거처가는 경유국이다. 정부나 선주협회의 소관 밖에서 운항되는 소형 어선에 탑승한 외국인 어부들은 강제노동 등의 착취에 취약하다. E6-2 호텔유흥 비자로 입국한—대부분이 필리핀, 중국, 키르기스스탄 출신인—일부 외국인 여성들은 항구와 미군 기지 주변의 유흥업소에서 강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 중 일부는 한국에 도착한 후에 강제 성매매나 강제노동을 강요받는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등지에서 아동 성관광에 나서는 한국 남성들도 있다.